

# 교원인사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7조~제57조 및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하여 한신대학교에서 연구, 교육, 봉사하는 교원의 임용자격, 신분보장 등에 적용할 교원인사행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8.>

제2조(교원의 종류) ①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8. 7. 8., 2019. 6. 27., 2022. 2. 17., 2022. 08. 26.>

1. 삭제 <2022. 08. 26.>

2. 삭제 <2022. 08. 26.>

②전임교원의 구분과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8., 2010. 12. 29., 2011. 8. 26., 2011. 12. 1., 2019. 6. 27., 2020. 7. 16., 2021. 04. 27., 2022. 2. 17., 2022. 08. 26.>

1. 전임교원은 정년심사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하고 정년트랙 전임교원 직급은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직급은 조교수, 부교수로 한다. 다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08. 26.>

가. 정년트랙 전임교원: 정년제 전임교원, 연봉제 전임교원, 계약제 전임교원, 특성화계약제 전임교원, 혁신사업 전임교원

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강의중점계약제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외국인(원어민) 전임교원

2. 전임교원 중 계약제 계약제 전임교원, 특성화계약제 전임교원, 혁신사업 전임교원, 강의중점계약제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외국인(원어민) 전임교원 등은 특수한 수요가 인정되는 분야에 한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 08. 26.>

③비전임교원의 종류는 명예교수, 석좌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특임교수, 기금교수, 연구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등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8., 2010. 1. 20., 2020. 4. 1., 2022. 2. 17.>

④제2조 제1항의 강사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6. 27.>

⑤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강의만을 담당하는 강의전담강사, 학문연구만을 담당하는 연구전담강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담당하는 산학협력전담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9. 6. 27.>

제3조(직급) 전임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개정 2008. 7. 8., 2011. 12. 1., 2022. 2. 17.>

제4조(소속, 소속변경 및 겸소속) ①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은 본교의 대학(원), 부속기관, 부설기관, 산학협력기관 등에 소속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정책결정에 의하여 원소속 단위 이외에 다른 단위로 소속변경 및 겸소속을 할 수 있다. 단, 겸소속인 경우 그 업적에 대한 평가는 원소속 단위에서 행하도록 한다. <개정 2008. 7. 8., 2010. 11. 24., 2022. 2. 17.>

②소속변경 및 겸소속 변경 승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신설 2010. 11. 24.>

1. 교원의 소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교원은 원소속 단위와 소속변경 단위 간의 협의 및 동의로 원소속 대학(원)장 및 변경소속 대학(원)장의 확인과 기획처의 검토를 거쳐, 소정의 신청서를 학기 시작일 3개월 전까지 교무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또는 총장이 대학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개정 2021. 04. 27., 2022. 2. 17.>

2. 겸소속을 원하는 교원은 원소속 단위와 겸소속 단위간의 협의 및 동의로 겸소속 대학(원)장 및 원소속 대학(원)장의 확인과 기획처의 검토를 거쳐, 소정의 신청서를 학기 시작일 1개월 전까지 교무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발령한다. 또는 총장이 대학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발령한다. <개정 2021. 04. 27., 2022. 2. 17.>

③겸소속 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2. 08. 26.>

1. 채용시 겸소속을 발령받은 경우 겸소속 기간은 퇴직시까지로 한다. 다만, 정책결정 또는 제②항제2호의 절차를 거쳐 겸소속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2. 08. 26.>

2. 재직 중 겸소속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시에는 겸소속 연장신청 공문과 겸소속(연장)신청서를 교무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08. 26.>

④겸소속 교원은 겸소속 단위의 신규채용 임용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겸소속 학부(과)장 및 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종류) <삭제 2008. 7. 8.>

제6조(겸직) ①본교의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립된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맡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임할 수 있다.

②본교의 교원이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위를 위촉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본교의 교원으로서 총장직에 취임하는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즉시 취임 전 소속 학과의 교원으로 복귀한다.

④본교 교원은 교육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일정기간을 타 학생모집단위의 교육과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겸직 기간 내에서 해당교수의 신분과 권한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원소속 단위의 교육의무는 해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에 따른 교육상의 문제를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05. 6. 9.>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전허가 없이 외부기관 겸직이 가능하다. <신설 2019. 12. 27.>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직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직
3. 학술단체 또는 학술협회 등의 비상근 위원 및 임원

제7조(정년) 본교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제7조의2(명예퇴직)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범위) 임면이라 함은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승급, 보직, 면직 및 파면 기타 신분상의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인사상의 발령을 말한다.

## 제 2 장 교원인사위원회

제9조(권한) 교원인사위원회는 정관 제51조에 따라 교원의 임용, 보직(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승진, 휴직 및 자격심사, 업적평가, 기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4. 12. 5., 2022. 08. 26.>

제10조(구성) ①교원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9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 08. 26.>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혁신처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교목실장, 기획처장, 학생복지처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 총장이 위촉하는 5인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 위원은 각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임교원 신규 임용 시에는 해당 대학장이 교원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추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 9. 1., 2021. 04. 27., 2022. 08. 26.>

③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08. 26.>

## 제 3 장 임용, 승진

제11조(임용기간) ①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정관 제3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계약제 전임교원, 특성화계약제 전임교원, 혁신사업 전임교원, 강의중점계약제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외국인(원어민) 전임교원은 개별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 3. 1., 2008. 7. 8., 2015. 12. 15., 2021. 4. 27., 2022. 2. 17.>

1.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신설 2015. 12. 15.><개정 2020. 12. 8.>

2. 부교수 : 6년 이내의 기간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5. 12. 15., 2020. 12. 8.>

3. 조교수 : 4년 이내의 기간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5. 12. 15., 2020. 12. 8.>

4. 삭제 <2008. 7. 8.>

②타 대학에서 교수 또는 부교수 직급으로 본교에 정년트랙에 신규임용할 경우에 임용 직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 12. 15., 2022. 2. 17.>

1. 4년제 정규대학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재직한 교원은 동일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4년제 정규대학에서 정년을 보장 받은 교수는 재직 경력을 인정하여 교수 직급을 부여하고 최초임용기간을 3년으로 하며, 이 기간에 대하여 부교수 재임용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정년까지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재임용 평가를 받아야 한다.

3. 4년제 정규대학 이외 대학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재직한 부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경력(6년 이상)과 A급 논문 게재 실적(600% 이상)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부교수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4. 비정년트랙에 신규임용한 경우에는 타 대학 직급을 반영하지 않는다.

③삭제 <2008. 7. 8.>

④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개정 2020. 12. 8.>

제11조의1(임용제한) ①교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학칙에 정하는 학생모집단위(학과 또는 학부)별로 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대학 학사학위를 소지한 경우라도 채용전공분야와 학사학위 취득분야가 다른 경우는 이를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로 보지 않는다.

②제1항의 규정은 1년을 단위로 적용하되, 연간 모집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모집인원이 3인 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제11조의2(용어의 정의) <신설 2015. 12. 15.>

①신규임용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임용함”을 말한다.

②승진임용이라 함은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임용함”을 말한다.

③재임용이라 함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함”을 말한다.

제12조(임용시기) ①제11조 각항의 임용은 매학기 초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임용계약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자격) ①교육공무원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②본교의 건교이념을 존중하는 기독교인(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한다.

③박사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④신학과 교원, 기독교교육학과에서 신학과목을 담당하는 교원, 교목은 본조 제1, 2,

3항에 해당하는 목사로서 3년 이상의 목회경험을 가진 자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 10. 8.>

⑤본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연구 경력의 연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8. 6., 2017. 2. 27.>

### 교원의 자격기준

(단위: 년)

연구·교육 직명	학력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교수		4	6	10
부교수		3	4	7
조교수		2	2	4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⑥<개정 2012. 8. 6.><삭제 2017. 2. 27.>

제14조(교원의 임명) ①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동의  
를 얻은 후 이사회에 제청한다. <개정 2017. 2. 27.>

②이사회 임용제청시(또는 충원계획보고시)에는 임용대상자의 해당 학생모집단위(학과 또는 학부)의 교과과정표 및 강의할 교과목표를 첨부한다.

제15조(교원채용의뢰) ①해당 학과(부)장은 학과(부)의 교수회의와 학생들의 의견수렴  
을 통하여 채용 전공분야를 결정하고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교원채용을  
의뢰한다. <개정 2008. 7. 8.>

②비모집단위 및 학과(부)장이 없는 신설 학생 모집단위 [학과(부)]의 교원은 교무혁신  
처장이 소속 대학장이나 유관 대학장과 협의하여 총장에게 채용을 의뢰한다. <개정  
2008. 7. 8., 2021. 04. 27.>

③총장은 위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채용 예정교원의 전공분야에 대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7. 8.>

제16조(교원채용공고) ①총장은 교원 보유기준을 감안한 해당 모집단위(학과(부) 또는  
비모집단위(부서)의 채용인원을 결정하여 채용 공고한다. <개정 2022. 08. 26.>

②지원자 접수결과 서류심사 합격자가 채용인원의 3배수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해서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14. 12. 5., 2020. 7. 16., 2022. 08. 26.>

제17조(채용절차) ①총장은 제13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자격을 갖춘 채용응모자에  
대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하되 세부 절차는 교원신규채용 시행세칙에 따른다. 다만, 교  
목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7. 10. 8.>

②삭제 <2007. 10. 8.>

③총장은 해당 학과 또는 학부에서 추천한 교원 채용예정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친 후, 교원채용예정자를 관례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에 부의한다. <개정 2007. 10. 8.>

④교원인사위원회는 총장이 부의한 자에 대한 자격 및 심사 절차의 적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이 때 부결된 부의자가 있을 경우, 그 부결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8.>

⑤총장은 부결된 부의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부결 사유를 해당 대학장을 경유, 해당 학과(부)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개정 2008. 7. 8.>

⑥채용 불가를 통보받은 학과(부)는 총장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재 부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이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 재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8. 7. 8.>

제18조(임명절차) ①교원을 신규채용 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소정의 절차에 의한 결재를 필한 후 발령한다.

구비서류 :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성적증명서, 서약서, 신원진술서, 신원보증서, 주민등록 등·초본, 세례교인증명서(목사의 경우에는 노회 소속증명서), 소속 기관장동의서(겸임교원에 한함) <개정 2020. 7. 16.>

②교원의 임명, 승진, 보직에는 발령장을 교부하고 전보, 해직, 휴직, 정직, 복직, 면직 기타 제급여는 발령통지서에 의한다.

제19조(승진) 교원은 본교의 교수업적평가관리규정 및 기타 승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승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7.>

①승진 시점은 3월 1일자 및 9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5. 12. 15.>

②교원이 상위직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저 소요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12. 15.>

1. 교 수 : 부교수 직위에서 6년 이상인자
2. 부교수: 조교수 직위에서 4년 이상인자

③부교수에서 교수 승진시에는 박사 학위 취득 후 교육경력 10년 이상자로 하며, 경력이 부족한 자는 해당 기간까지 부교수 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특별승진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 2. 17.>

④부교수 승진시부터는 학위논문을 연구업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 2. 17.>

⑤승진소요연수 산정에 있어 본교 또는 타 대학의 경력 인정 범위는 교수 직급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1년 미만인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15.><개정 2022. 2. 17.>

1. 4년제 정규대학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조교수 또는 부교수로 재직한 기간은 본교 정년트랙 전임교수 승진기간에 100%를 합산할 수 있으며, 4년제 정규대학 이외의 대학은 50%를 합산할 수 있다.
2. 본교 또는 4년제 정규대학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강의전담교수)으로 조교수로 재직한 기간은 본교 정년트랙 승진기간에 40%를 합산할 수 있으며, 4년제 정규대학 이외의 대학은 20%를 합산할 수 있다.

3. 직급별 최대 경력 인정 기간은 조교수 2년, 부교수 3년까지로 한다.

⑥제⑤항의 승진소요연수 산정에 있어 타 대학의 재직연수는 승진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나, 본교에서 조교수는 2년 이상, 부교수는 3년 이상 근무하여야 승진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신설 2015. 12. 15.><개정 2019. 12. 27., 2020. 9. 15., 2022. 2. 17.>

⑦징계처분, 휴직으로 인한 승급정지 처분을 받은 교원의 승진소요연수는 정지 기간을 합산한다. <신설 2015. 12. 15.><개정 2022. 2. 17.>

⑧제②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연구업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의 승진 소요연수에 앞서 특별승진 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은 “교수업적평가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 08. 26.>

제19조의2(승진임용의 제한) 승진임용의 제한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신설 2019. 12. 27.>

제20조(승급) ①교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3월 1일과 9월1일자로 시행한다. <개정 2015. 12. 15.>

②<신설 2004. 6. 11.><개정 2007. 3. 1., 2014. 12. 5.><삭제 2022. 08. 26.>

③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징계처분 이후 최초 정기 승급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기본호봉, 연구비호봉, 성과급 호봉 등 모든 호봉의 승급을 정지한다. <신설 2015. 12. 15.>

1. 정직 : 18개월
2. 감봉 : 12개월
3. 견책 : 6개월

④<신설 2015. 12. 15.><삭제 2016. 12. 8.>

⑤정관 제42조 제2호, 제7호, 제11호 이외에 휴직하는 교원은 기본호봉, 연구비호봉, 성과급 호봉 등 모든 호봉의 승급을 정지한다. <신설 2015. 12. 15.><개정 2022. 08. 26.>

⑥교수업적평가 직급별 트랙 의무(2년간 A급논문 게재실적)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연구비 호봉 승급, 성과급 호봉 승급, 연구년을 향후 2년간(차기 트랙기간동안) 정지한다. <신설 2015. 12. 15.><개정 2022. 2. 17., 2022. 08. 26.>

⑦승급정지의 원인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 12. 15.>

제21조(정년보장) ①<개정 2007. 3. 1., 2011. 8. 26., 2012. 8. 16., 2015. 12. 15.>  
<삭제 2016. 9. 20>

②교수로 임용되는 교원은 정년을 보장한다. 다만, 교수로 신규 임용된 교원은 재임용을 받을 때부터 정년을 보장한다. <개정 2008. 7. 8.>

제22조(교원의 면직) 교원의 임면권자는 정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23조(연수계산)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과 근속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은 통산할 수 있다.
  2. 동일한 기간 중 둘 이상의 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은 그 하나만을 계산한다.
  3.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연구기간은 박사학위는 최장 5년, 석사학위는 2년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4.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의 박사학위 수료기간은 최장 3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수료기간을 연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의 수료기간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5. 대학의 각 연구소 또는 그 밖의 연구소에서의 연구기간은 그 연구소의 학문적 권위, 연구자의 연구업적 및 내용을 감안하여 인정하되 그 전 기간을 연구 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
  6. 신학과와 기독교교육학과 교원의 경우 한국기독교장로회 혹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인정하는 국내 및 해외 교회에서의 교역경력은 이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되 전도사의 경우 50%, 목사의 경우 100%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7. 실무기관에서의 근무연한은 근무자의 직책, 전공분야, 기관의 성격을 감안하여 연구경력으로 인정하되 50%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8.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전임교원으로서의 교육기간은 이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9.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강사로서의 교육기간은 이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되 주당 5시간까지는 50%, 5시간초과 할 때마다 시간당 10%를 가산 적용한다.
  10. 타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인정한 경력 및 직위는 본교의 연수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9. 5. 26.>
  11. 중,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중등교육기관에서의 교육기간은 이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되 50%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12. 본교 교원의 근속연수산정은 전임교원 발령일자로부터 시작된다.
  13. 신규채용자의 연구비 호봉은 해당 직위의 1호부터 시작한다. <신설 2009. 5. 26.>
- 제24조(교원의 업적평가) 교원의 업적은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단, 평가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25조(학교발전 공헌)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라 함은 행정적 봉사와 학생지도 및 제도개선에 참여하여 학교발전에 공헌함을 뜻한다.
- 제26조(승진임용의 절차) ①승진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총장은 승진임용 될 교원을 매 학기말에 그 교수의 교수업적평가표를 첨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 제27조(교원의 보수) 교원의 보수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 제 4 장 휴직, 복직

제28조(휴직사유) 전임교원에게 정관 제42조에 해당하는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휴직기간) ①휴직기간은 정관 제43조에 따른다. 단, 연구년에 이어서 휴직을 계속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5., 2015. 12. 15., 2022. 08. 26.>

②휴직기간은 학사운영을 고려하여 3월 1일 또는 9월 1일 학기 단위로 기간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2. 08. 26.>

③휴직기간은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임용기간에 합산한다. <신설 2022. 08. 26.>

제30조(휴직기간의 만료) ①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 중 사유가 소멸(고용기간 종료 등)되면 30일 이내에 복귀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0. 00.>

②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 면직한다. <개정 2022. 08. 26.>

제31조(복직교원의 의무) 복직교원은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제32조(휴직교원의 처우) ①정관 제42조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개정 2022. 08. 26.>

②정관 제42조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08. 26.>

③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관 제42조 제2호, 제7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이를 근속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2022. 08. 26.>

제33조(휴직중 급여액의 반환) 제30조에 의하여 자동 면직된 교원과 제31조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교원은 휴직 중 급여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정관 제42조1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34조(절차) 휴직, 복직은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 5 장 연 구 년 제 도

제35조(연구년 제도) 연구년 제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7. 3. 1.>

## 제 6 장 교 원 징 계

제36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70조에 따라 교원의 징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7조(교원징계위원회 조직) 본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한신학

원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7. 10., 2015. 12. 15.>  
제38조(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 정관에 명시된 대로 한다.

## 제 7 장 재 임 용 <신설 2016. 12. 8.>

제39조(재임용의 대상) <신설 2015. 12. 15.>

①재임용 심사대상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로 하되, 재임용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8.>

1. 부교수 : 3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20. 12. 8.>
2. 조교수 : 2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20. 12. 8.>

②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교원은 당연 퇴직된다.

③승진임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임용 기간내에도 승진할 수 있으며 승진시에는 재임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9. 7. 15.><개정 2020. 12. 8.>

④재임용 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직급에 임용된 날로부터 한다. 다만, 그 임기가 학기 도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기만료일로 본다. <신설 2022. 08. 26.>

⑤징계처분, 휴직으로 인한 승급정지 처분을 받은 교원의 재임용 소요연수는 정지 기간을 합산한다. <신설 2022. 08. 26.>

제40조(심사방법) <신설 2015. 12. 15.>

①재임용 심사대상자에게는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교원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교무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4. 27.>

②심사기준 및 기간은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③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재임용심사에서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재임용시점) 재임용 시점은 3월 1일자 및 9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5. 12. 15.>

## 제 8 장 퇴 직 및 면 직 <신설 2016. 12. 8.>

제42조(퇴직 및 면직) <신설 2015. 12. 15.>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1. 사망했을 때
2. 정년에 달한 때
3. 재임용심사에서 탈락되었을 때
4.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할 때

②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면직될 수 있다.

1. 교원 본인이 면직을 청원한 때
2. 계약 임용자의 경우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교원근무에 관한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때
4.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 요건이 충족된 때

### 부 칙

1. 시 행 일 : 이 규정은 197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각급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한다.

### 부 칙

1. 이 개정규정 198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현재 재임중에 있는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의 기간계산은 그 임용일자부터 적용된다.
3. 현재 휴직중에 있는 교원은 휴직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198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제4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중 “교수평의회에서 추천한 3인”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 )로 둔다.

##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199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199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199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199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 이 규정은 199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 1. 제35조 3항은 기 시행된 교원도 적용한다.

##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2조 ①, ③)

부 칙(2004. 6. 11.)

제1조 시행일: 제11조 제3항의 신설규정은 2004년 6월 11일부터, 제20조 제2항의 신설 규정은 2004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비호봉 승급 관련 경과조치: ①제20조 제2항의 신설규정에 따른 정교수 호봉 승급에 필요한 연구업적의 산정은 아래의 기준에 의한다.

1. 승진 후 1~4개학기 경과된 정교수: 승진 후 최초 6년이 되는 때의 총 연구업적이 교수업적평가관리규정에 의한 종합평점은 200점으로 한다.
2. 승진 후 5~8개학기 경과된 정교수: 승진 후 최초 6년이 되는 때의 총 연구업적이 교수업적평가관리규정에 의한 종합평점은 100점으로 한다.

②제20조 제2항의 신설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9개학기 이상 경과된 정교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기 아니한다.

부 칙(2005. 6. 9.)

1.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교육단위 소속 및 단서조항 추가, 제6조4항 신설)

부 칙(2005. 9. 1.)

1.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개정)

부 칙(2007. 3. 13.)

1.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35조 개정) 단, 제20조②항은 2007년 3월1일 이후 승진자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정년이 보장된 전임교원은 본 규정 제2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년을 보장받는다.

부 칙(2007. 10. 8.)

1.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④항 교목 추가, 제17조①항 부분 개정, ②항 삭제, ③항 면접심사 추가)

부 칙(2008. 7. 8.)

1.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26.)

1.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10호,13호 신설)

부 칙(2010. 1. 20.)

1.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③항 초빙(강의전담)교원을 초빙교원, 초빙강의교원으로 변경함)

부 칙(2010. 11. 24.)

1.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개정)

부 칙(2010. 12. 29.)

1.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②항-계약제 전임교원의 종류 추가)

부 칙(2011. 8. 26.)

1.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②항, 제21조①항-외국인(원어민)교원 추가)

부 칙(2011. 12. 1.)

1.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②항, 제3조 개정, 전임강사 삭제 및 강의전담계약제 전임교원 신설)

부 칙(2012. 8. 16.)

1.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①항3호 삭제, 제13조⑤항 표개정, ⑥항 개정, 제21조①항 개정)

부 칙(2014. 7. 10.)

1. 이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7조 개정)

부 칙(2014. 12. 5.)

1.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제16조②항, 제20조②항, 제

29조 개정)

부 칙(2015. 12. 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①항 개정, 제11조②항 신설, 11조의2 신설, 제19조①항,②항,③항,④항,⑤항 신설, 제20조①항 개정, 제20조 ③항,④항,⑤항,⑥항,⑦항 신설, 제21조 개정, 제29조 개정, 제32조 개정, 제37조 개정, 제39~42조 신설)

제2조(경과조치) ①제19조 개정 규정은 이전 신규임용 및 승진자의 1개월 이하 부족분에 대하여 승진소요연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제20조 4항의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3월 최초 정기승급부터 적용한다.

③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6. 3. 1. 이후 신규 및 승진임용자부터 적용하며, 2016. 2. 29.까지 재직중인 교원의 근무연한 및 정년보장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근무연한이 경과된 교원은 당연 퇴직된다.

1. 교수 및 2006년 이전 부교수 임용자 : 정년
2. 2007년 이후 부교수 임용자 : 10년
3. 2007년 이후 조교수 : 7년

부 칙(2016. 9. 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1조①항 삭제)

부 칙(2016. 12.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④항 삭제, 제7,8장 추가)

부 칙(2019. 6. 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 중 강사에 관한 사항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채용 되는 강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7. 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39조③항 신설)

부 칙(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⑤항 신설, 제

19조④항 단서조항삽입, 제19조의1 신설)

부 칙(2020. 4.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③항 개정)

부 칙(2020. 7. 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②항, 제16조②항, 제18조①항 개정)

부 칙(2020. 9. 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④항 개정)  
제2조(경과조치) 제19조 제④항의 개정사항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①항1호,2호,3호 개정, ④항 신설, 제39조①항 개정, ①항1호,2호 신설, ③항 개정)

부 칙(2021. 4. 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제2조②항, 제4조②항1호,2호, 제10조, 제11조①항, 제15조②항, 제40조①항 중 직제개편으로 부서(장)명칭과 교원명칭(강의중점교원) 개정)

부 칙(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①항,②항,③항, 제3조, 제4조①항,②항1호,2호, 제11조①항,②항, 제19조, 제19조⑤항,⑥항,⑦항 개정, 제19조③항,④항 신설, 제20조⑥항 개정)

부 칙(2022. 08. 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①항 개정, 제2조①항1호,2호 삭제, 제2조②항,②항2호 개정, 제2조②항1호 신설, 제4조③항,③항2호 개정, 제4조③항1호 신설, 제9조 개정, 제10조①항,③항 신설, 제10조②항, 제16조①항,②항 개정, 제19조⑧항 신설, 제20조②항 삭제, 제20조⑤항,⑥항, 제29조①항 개정, 제29조②항,③항 신설, 제30조①항 신설, 제30조②항, 제32조①항,②항,③항 개정, 제39조④항,⑤항 신설)